https://doi.org/10.37733/tkjt.2020.5.97

사회보험료 징수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병 일*·백 승 삼**

요 약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중복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은 물론 징수통합 후 절감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단의 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업무인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민원업무도 동 공단 지사로 창구가 일원화되었다. 하지만, 보험료 징수통합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회복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의무가입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으며, 고용보험료의 부과를 위해 소득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회보험료도 부과기준의 재검토와 동시에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보험료 징수통합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징수업무가 통합되어 민원인이 자격(적용)·부과·급여업무의 소관공단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각각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상되는 복합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 공단의 지원을 받는 (가칭)사회보험종합민원센터를 마련하는 등 원스톱서비스를 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세청의 소득관련 자료의 활용,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국세청을 통한 국세와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료 및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평등한 사회보험 부과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보험사각지대, 고용보험 의무가입

논문접수일 2020. 06. 04. 최종수정일 2020. 06. 26. 게재확정일 2020. 06. 29.

* 제1저자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법학박사 ; bikim22@daum.net

** 교신저자 :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 세무사 ; taxbss@daum.net

Ⅰ. 머리말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회복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0.38%에 지나지 않는 자영업자의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체제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제기했다. 이에 자영업자 등[1]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있어서,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나머지 사회보험도 부과기준의 재검토와 동시에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것이다.

과거에 정부는 2006년 9월 4대 사회보험[2] 통합징수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 8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1월 3일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개통하고 징수통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통하여 각 공단과 사업장의 사회보험 업무가

1) 연합뉴스, “월급 받는데 프리랜서라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1천300만명”, 2020.5.17. 특수 고용직도 아닌 일반 사무직, 유치원 강사, 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핸드폰 판매사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 1천300만명이 정부의 일자리 핵심 대책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고용보험 밖에 있는 1천300만명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주프랑스대사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개혁동향”, 2017.4.5. 3면. 사회보장제도의 이념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비스마르크 방식(독일형)으로 재원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며,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체계, 사회보장 급여수준은 임금과 연계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근로자간 연대 방식과 베버리지 방식(영국형)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체계로,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조세를 통해 실업, 질병, 연금 등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

간결해지고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의 4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 이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사업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각 공단에서 자격관리 및 급여지급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4대 보험업무 중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3개 보험공단을 각각 상대해야 하고, 보험별로 부과기준과 적용범위 등이 달라 보험사무가 복잡해 행정비용 증가 및 업무가 중복되고 있어 사업자에게 많은 시간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4대 보험공단을 통하여 국민생활 삶의 질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4대 보험료 신고 및 징수방식은 사업자의 형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3)]

이에 본고는 4대 사회보험료의 신고·부과 및 징수통합업무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선행연구

김동헌·허재준(2018)[4)]은 우리나라의 일차적 실업자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미적용 사각지대와 미가입 사각지대로 나누어 식별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미적용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규범 확립 등 제도의 포괄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이 요구된

3) 한국노동연구원, 「사회보험료의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17.9., 141면.
4) 김동헌·허재준,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30권 제1호, 한국정부학회, 2018.

다.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는 사회보험료 징수방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사회보험료 납부를 소득신고와 연계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보험료 적용·부과·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과 함께 장기적인 시각에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대 또한 병행해서 추진하여야 할 중대한 정책과제이다.

즉, 국세청을 통한 사회보험료징수 일원화를 통하여 사회보험의 가입의무 및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근주(2020)[5]는 현재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실업부조 등 보충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은 근로자사회보험 중심의 고용보험이 중심을 이루어왔다. 고용보험은 제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지만, 비공식 고용 문제나 급여 수혜 사각지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발적 이직에 대한 원칙적인 실업 불인정 문제는 고용보험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의 고용보험 적용 논의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3층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고용안전망 체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검토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과 플랫폼 노동으로 대비되는 미래 고용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대응, 국민취업제도를 통한 실업부조의 도입과 문제점, 그리고 소득 중심의 인적 고용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조세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에 관한 정책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고용안전망에 관한 향후 논의에서는 ① 고용보험가입대상과 관련

5) 김근주, "고용안전망 체계 개편의 방향과 정책적 검토 사항", 「노동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2020.3.

하여, 노동법과 독자적인 가입 대상(근로자성의 탈피)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보충적 고용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공공부조와의 관계, ③ 소득기반 인적적용으로의 전환필요성과 조세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의 필요성에 관한 입장이 정리되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소득세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할 필요가 있어 사회보험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수기관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실시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일원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단기방안으로는 예상되는 복합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 공단의 지원을 받는 (가칭) 사회보험종합민원센터를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에 의한 국세와 사회보험료 징수 일원화를 통한 보험료 징수체계와 세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III.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경위와 그 범위

1. 경위

정부는 지난 수년간의 사회보험 효율화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2008년 8월 공기업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거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침을 결정하였다.[6] 즉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성 제고,

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주·토공 통합 등 공기업선진화 착수 -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

이용 편의성 증대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관간 기능의 재조정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일원화하여 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사회보험의 징수업무의 통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징수통합의 주관부처로써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비롯하여 「노사정실무협의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및 각 공단, 노조간 협력 하에 징수통합관련 법률의 개정, 징수 업무와 조직의 재설계, 인력의 재배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징수통합 시행 준비에 매진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수통합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그 간 준비해 온 징수통합 정보시스템을 2011년 1월 3일 정상적으로 개통하고 징수통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7]

2.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각 사회보험의 신규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수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징수위탁을 받은 업무를 시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징수통합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그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내용[8]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추가하였다.[9]

합, 기능조정 등 선진화 방안 1차 발표-, 2008.8.11.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사회보험 징수통합 본격시행에 돌입, 2011.1.3.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1.1.1.] [법률 제9690호, 2009.5.21., 일부개정].

9)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 제10호(현행 제14조 제1항 제11호 석면피해구제법도 포함).

②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자격요건, 추천·임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다.[10]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를 국민건강보험사업과 징수위탁 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고용보험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임금채권보장사업을 구분하여 계리(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11]

④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의 근거를 마련하였다.[12]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13]

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 각 사회보험에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14]

⑦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15]

⑧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시험 운영하도록 하였다.[16]

3.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업무범위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는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 산재보험

10)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의2(현행 제21조).
11)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3항(현행 제35조 제3항).
12)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제1항 후단(현행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3)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제2항(현행 제96조 제1항).
14)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3(현행 제113조 제1항).
15)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16)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관련 근거법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수위탁 근거 관련 법률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의 위탁에 따른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신설한 것이다.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을 실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고지방식, 납부방법 및 창구의 일원화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둘째는 징수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은 중복업무를 효율화하여 인건비, 고지서 발송비용 그 밖에 행정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17]

4. 사회보험료와 조세와의 관계

가. 사회보험관계의 법적 성질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18]를 말한다. 이는 위험분산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적인 보험을 사회적인 방법[19]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여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20]

17) 조원탁외 3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1, 443면.

18)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19) 사회적인 방법이란 가입의 강제성 또는 이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의미한다(조원탁외 3인, 전게서, 413면).

20) 상게서, 413면. "경제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받을 정도의 질병·상해·사망 기타 상당한 재산상 부담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위험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다수인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

사회보험관계의 당사자에는 보험자(보험의 운영주체)·피보험자(보험가입자[21])·사업주·보험의료기관이 있어서 서로 다각적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다. 즉,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법률관계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는 사업주가 납부의무자임),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험자는 급여할 의무를 지는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사회보험의 계약관계는 공법상 계약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국가적·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설치된 제도로서 보험가입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며, 기여금의 징수는 행정강제의 방법을 이용하며, 사회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과 임원의 구성 및 정관의 제·개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공법적 특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급권의 양도·압류 등에 제한을 가하며, 또 국민연금의 운영주체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법인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22]

나. 사회보험료와 조세와의 관계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그의 과세권력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이며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고 정의된다.[23] 이러한 조세에 대해서는 헌법상 엄격한 통제가 가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이 세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헌법적 근거를 지니고

한 사회보장적 작용"이라고도 한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607면).

2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가입자는 사업주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험수급권자이다.

22)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300면; 강희갑외 5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134면 참조; 국민연금법 제40조.

23)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 30면.

있음에 반하여 사회보험 및 사회보험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헌법 제34조[24]에 간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5] 그런데, 조세의 범위에 사회보험료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목적·부과대상·사용방법 등의 차이 때문에 구별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와 사회보험료·부담금 등을 포괄하여 공법상 부담금법 또는 공과금법이라는 범주에 함께 묶고 행정주체가 수행하는 과제를 위한 재정적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견해도 있다.[26] 주로 영미국가의 사회보장세라는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료를 광의의 조세에 포함시키기도 한다.[27] 이에 이하에서는 사회보험료와 조세와의 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은 그 본래의 목적은 다르지만 기능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조세법상 실시되는 소득공제제도와 조세감면제도, 부(負)의 소득세(nagative income tax ; NIT)[28] 등은 최저한의 소득

24)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5) 이에 비하여 독일은 연방기본법 제105조에서 세금부과의 헌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은 입법권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 동 기본법 제74조 제12호에 간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연방의회는 동 기본법 제74조 제12호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일반 및 사회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권한이 있음이 인정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등 자세한 사항은 사회법전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지고 있다. 홍완식, 「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59면.

26) 김성수, 「세법」, 법문사, 2003, 8면.

27) 최 원, "사회보장세법상 세율의 적정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조세법연구(XIV-3)」, 한국세법학회, 2008.12, 298면.

28) 부의 소득세는 과세최저한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의 소득세액을 환급하는 제도, 즉 부의 소득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이전적 급부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삼일

보장 또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비록 소극적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상의 급여제도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정책의 재원이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을 포함하여 사회법과 조세법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상태이다.[29] 즉 조세법과 사회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벌면 소득세를 부과하고 일정한 수준 이하가 되면 사회적 부조를 해주게 된다. 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금액을 소득세법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다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라는 헌법상의 명령을 받아 규정된 사회법의 규정에 반하여 최저생계비에서 소득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에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헌법 제34에 반하게 된다.[30]

사회보험이 강제성을 띨 경우 사회보험료가 일면 조세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31] 또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이 반드시 일치해야

인포마인, 2019, 123면).

29) 사회보험의 경우 강제로 부여되는 기여금(보험료)과 직접세인 소득세는 그 양태가 매우 유사하다. 특히 그 조세가 목적세인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사회보험의 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의 재원이 조세에 의한 경우, 기여금의 체납시에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사회복지급여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등은 사회복지법이 조세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1, 110면).

30)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1, 53-54면.

31) Kleven, Kreiner and Saez(2015)에 따르면, 국가간 비교를 할 때 선진국일수록 조세회피가 작다. 즉 조세는 현대세(modern taxes)와 전통세(traditional taxes)로 나누어볼 때, 현대세는 제3자 보고에 의존하는 세금인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조세를 의미하며, 전통세는 자기보고에 의존하는 세금인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의미한다. 선진국일수록 현대세의 비중이 높고, 역사적으로 보면 선진국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현대세의 비중이 높아져 조세회피가 작게 된 것이라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전게서, 151-152면. 즉 사회보험료의 조세화는 조세회피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고, 사회보험제도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임시직 일자리, 시간제 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사회보험공단의 관리체계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국세청을 통한 부과징수의 일원화를 통하여 국세청 세무조사시 사회보험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할 이유는 없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사회법의 단일법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법상의 '소득'의 개념을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일치시키고자 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 개념을 사용할 경우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법상의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사회보장급여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32] 사회복지법에 의한 급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는 이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국가가 과세한다면, 이는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도 공공부조 급여에 관하여서는 과세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형식적 의미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소득세법이 세원으로서 공공부조 급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실질적 의미에서는 조세형평주의에 따르는 것이다. 즉, 생존비용에 해당되는 공공부조 급여에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33]

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의 구별

사회보험료와 세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34] 사회보험료는 세금과 징수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첫째의 상이점을 찾을 수 있으며, 둘째로는 일반국민들이 납부의무자인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급여 혜택을 위하

32) 이동식, 전게서, 111면.

33)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는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기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의하여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 등 각종 급여들이 이에 해당된다.

34) 홍완식, 전게서, 59-61면.

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 피보험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누진적이거나 상한이 없는 소득세 산정방식과는 달리 사회보험료의 산정은 일정한 보험료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정한 상한이 존재한다. 넷째로는 사회보험료를 통하여 국가가 경제적인 면에서의 유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단지 사회보험정책면에서의 유도정책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Ⅳ. 주요국의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제도

1. 징수방법의 세계적인 추세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는 크게 ① 사회보험급부업무 담당관청이 관할하고 있는 국가, ② 재무부·국세청이 국세의 징수와 일원화하고 있는 국가, ③ 국세업무와 일원화를 부분적으로 행하고 있는 국가로 대별할 수 있다. 종전부터 사회보장재원의 갹출에 대해서는 비스마르크방식에 근거한 보험방식이 주류였기 때문에 사회보장담당부처나 사회보험청이 사회보험료의 징수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위의 ①의 유형)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35]

한편,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및 덴마크 등은 위의 ②의 유형에 속하고, 공적연금재원이 사회보장세 혹은 사회보험료로서 조세와 함께 일

35) 통합징수를 추진 중인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한 사례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있다. 독일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장기간병보호)에 대해 건보공단과 유사한 조직인 '질병금고'에서 통합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남찬섭·백인립,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의 함의와 전망", 「복지동향」,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0.6, 8면). 오스트리아도 연금·의료·산재보험의 운영·징수를 질병금고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모두 소득 파악과 징수가 어려운 자영업자(지역가입자)는 연금공단에서 운영·징수 업무를 전담해 운영한다. 한국처럼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를 통합해 운영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원적으로 징수되고 있다.[36] 그렇지만, 이들 국가들의 대부분은 예전부터 사회보험급부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 사회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그 징수를 행한 경위가 있고, 세무당국에 의한 완전한 일원적인 징수가 행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리고 일본과 체코 등은 통합 사회보험기구를 설치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관장 의료보험과 후생연금, 국민연금의 운영과 징수업무를 사회보험청 산하 '사회보험사무소' 에서 통합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연금을 통합운영체계에서 다시 분리, 각각의 공법인과 기구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37] 이와는 달리 별도의 기구를 통해 징수만 통합한 국가로는 프랑스, 벨기에 등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료 징수조합'이 징수업무를 맡고 있다.

다른 한편, 여러 나라의 사회보험료 징수체제의 역사적 변천을 더듬어 보면, 아직 징수일원화에서 징수분리로 이행한 국가는 거의 없다. 시대의 조류는 압도적으로 징수일원화이며 사회보험급부를 관할하는 관청이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제도설계는 급속히 변모·붕괴되어 가고 있다.[38] OECD 주요국의 조세당국의 사회보험료 징수 현황은 <표 1>과 같다.[39]

---

36) 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징수는 국가마다 사회적 환경과 특성이 달라 운영방식에 차이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은 사회보험료를 세금으로 인식, 국세청에서 징수하고 있다. 사회보험료를 일반조세 혹은 특별조세로 구분해 징수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미국은 국세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면 재무부가 징수한 보험금을 관리하고 사회보장청에서 급여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37) 한국노동연구원, 전게서, 136-137면; 체코,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는 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는 IMF의 권고에 따라 조세 및 사회보험 행정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38) 예를 들면, 종래 위의 ③의 유형에 해당한 캐나다도 2006년에는 세무당국이 징수를 담당하는 사회보험료의 범위가 새로이 확대되고, 세금과 피고용자보험료(employee contributions)가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호주의 경우도 종래는 ①의 유형에 속하였지만 2003년 이후는 조세당국과 사회보험당국이 공동으로 일체적인 조사·징수를 행하는 등 세금과 보험료의 징수사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39) 한국노동연구원, 전게서, 136-137면.

<표 1> OECD 주요국의 조세당국의 사회보험료 징수 현황(2013년)

구 분	해당 국가
사회보험료 분리징수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국가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2. 징수일원화의 이론상 효과

적지 않은 국가들이 징수사무의 통합·일원화를 도모하는 이유는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에 있어서 다음 몇 가지의 공통점을 들 수 있다. 먼저 납부를 해야 하는 자의 파악에서 징수에 이르는 일련의 징수사무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둘째, 징수율의 향상과 징수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징수를 행하는 측의 인적 자원의 유효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셋째, 징수일원화에 의해 행정조직전체의 집행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주요국의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제도

가. 사회보험료의 징수일원화 국가

1) 영 국

영국은 다른 나라의 징수일원화와 비교하여 대규모적인 조직통합을 수반하는 등의 엄격한 제 조건하에서 실행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 징수일원화를 검토할 때에 참고로 될 만한 풍부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사회보험제도(베버리지 방식)는 1911년 국민보험법 제정 이후 1946년 개정을 통해 현행제도인 단일보험인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에 통합되어 있다. 영국은 1974년 전후로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의 큰 변화를 보였다.[40]

1974년 이전의 영국에서는 사회보험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가 사

회보험료(고용자 자신에 관계되는 고용자부담분의 사회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료정보의 관리와 급부를 담당하였다. 영국세입청(HM Revenue & Customs : HMRC)은 급여세(Payroll Tax)[41]의 징수와 사회보험료의 납부상황의 관리(각인별의 납부완료된 금액이 세입으로 세입청에 불입된다) 및 납부상황의 사회보험청에 대한 연락을 담당하고 있었다.

1975년 이후는 피고용자에 관한 사회보험료의 납부방식의 통합[42]이 도모되고 사회보험부는 고용자 자신에 관한 사회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료 정보의 관리와 급부만을 담당하게 되고, 세입청은 급여세의 징수와 납부상황 및 정보의 관리와 사회보험료의 납부상황의 관리 및 납부상황의 사회보험청에 대한 연락을 담당하는 형태로 그 업무 내용을 확대시켰다.[43]

이와 같은 상황은 1999년의 사회보장개혁과 연금법 개정(the Welfare Reform

40) 영국 국가보험, https://www.politics.co.uk/reference/national-insurance(최종검색일 2020. 4.30.).

41) 당시에는 피고용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사회보험료를 고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불임금세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42) 고용자가 피고용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사회보험료와 그에 대한 고용자 부담부분을 아울러 급여세로서 고용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3) 영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구조를 갖고 있다. 영국은 국민보험 가입대상에게는 개인별 국민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 : NINO)를 부여하고 있다. 국민보험료 납부의무는 노령연금 수급연령 미만이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일차기준선(primary threshold)이면 발행하게 된다. 다만,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 NHS)방식으로 운영되어 국민보험료의 논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보험료는 경제적 지위에 따라 종별(Contribution Classes)로 산정되어 부과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득(earning)에 기해 부담하는 보험료(1종)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현물급여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1A종)로 구성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일부는 고정적인 주별 또는 월별 부담액을 기준으로 보험료(2B종)를 부담하며, 다른 일부는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4종)를 부담한다. 또한 가입대상자들은 개인별로 자신의 보험료기록상의 갭을 메우기 위해 임의적으로 보험료(3종)를 낼 수 있다. 한편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통합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국민보험 2종을 폐지하고 4종으로 통하려는 시도가 있다. 또한 국민보험의 관리체계에 있어서 국민보험료를 개인이 아니라 개별 일자리에 따라 산정되어 단일 일자리와 복수 일자리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민보험체계를 일자별로 관리체계에서 인별 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전게서, 98-99면).

and the Pension Act 1999)에 의해 새로이 변화되었다.[44] 예를 들면, 동법의 성립에 의해 2층 구조의 국가소득비례연금(States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의 적용제외로 되는 확정각출형 연금(Stake holder Pension)이 도입되고, 2층 구조의 급부를 받기 위한 조건(소득세의 납부 등)의 충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45]

그 결과 기초퇴직연금(Basic Retirement Pension)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당해 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조직면에서의 대응이 행하여지고 사회보험부로부터 세입청으로 권한을 새로이 이양하는 법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Transfer of Functions Etc.) Bill [HL], Bill 38)[46]이 1999년에 성립되어 종래의 사회보험부에서 그 집행부국인 징수국(Contributions Agency)이 분리됨과 동시에 세입청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47]

이와 같은 경위를 거쳐 사회보험부는 고용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로서 사회보험급부만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되었다. 사회보험료에 관한 입법·정책책임도 재무부와 세입청에 이양되고, 세입청은 급여세와 사회보험료의 징수, 보험료정보의 관리 및 고용연금부에 대한 납부정보의 연락 등을 관할하는 한편, 법정질병급부(Statutory Sick Pay)와 법정임부급부(Statutory Maternity Pay)에 관한 집행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2)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협의의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제도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호부((Department of

44) 영국 법령정보 사이트,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9/30/contents(최종검색일 2020.4.30.).

45) 영국 국가보험, https://www.gov.uk/national-insurance/national-insurance-classe(최종검색일 2020.4.30.).

46) 영국 의회자료,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RP99-12/RP99-12.pdf(최종검색일 2020.4.30.).

47) 松田直樹, “國稅と社會保險料の徵收一元化の理想と現實”,「稅大論叢」第47号, 2005, 56面.

Social Protection)가 관장하며 사회보험급여(구직자 수당, 상병수당, 산재보험급여, 연금 등), 자산조사 급여(공공부조), 보편급여(아동수당 등)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48]

보건의료제도는 영국의 보건의료제도와 유사하게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으로 재정조달이 되는 방식으로서,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관장하고 보건서비스청(Health Service Executive : HSE)이라는 기구가 운영한다. 그러므로 아일랜드의 보건의료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아일랜드의 사회보험은 보수연계 사회보험(Pay Related Social Insurance : PRSI)으로서 영국과 유사하게 종(class)로 세분화되며 사회보험의 종은 직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A,J,E,B,C,D,H,K,M,S,P등 11개로 세분되고 각 종에서 하위 종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근로자는 A종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income tax), 일반사회분담금(universal social charge : USC), 사회보험료(PRSI)로 구분되며, 소득세는 가구구성(독신,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달리 설정되며, 일정 소득 이하는 20%, 초과분에 대해서는 40%가 부과된다. 2011년에 income levy와 health levy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일반 사회분담금은 소득구간별로 1%, 3%, 5.5%, 8% 등으로 누진적용되며 다만,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와 일반 사회분담과 별도로 부과된다.

3) 스웨덴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1984년까지는 사회보장위원회(Social Insurance Board)가 1948년에 도입된 기존연금과 ATP(the Act on General Supplementary

48) 아일랜드 사회보험, 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social_welfare/irish_social_welfare_system/social_insurance_prsi/social_insurance_in_ireland.html(최종검색일 2020.4.30.); 한국노동연구원, 전게서, 99-100면.

Pension: 2층 구조의 연금)에 관계되는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급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에는 스웨덴 국세청(Swedish Tax Agency)이 세금 및 보험료의 징수를 담당하고,[49] 사회보험청(Swedish Social Insurance Board)이 연금급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징수일원화가 필요하게 된 배경으로 고용자가 피고용자의 전년소득에 의거 시산(試算)에 의해 보험료의 원천징수액을 가(假)결정하고 연 6회로 나누어 원천징수·납부를 행하는 구조하에서, 그 다음해 피고용자의 진실한 소득금액에 의거 다시 계산하여 사회보험청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신고와 실제 납부액과 대비시 미납이 판명된 경우 징수는 그 익년(원천징수를 행한 연도의 다다음해)이 되어 원천징수액의 시산에서 징수완료까지 약 2년 반의 기간을 요하고, 그 기간의 이자분의 손실이 문제시되었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위 징수원칙의 근본적인 개폐와 징수일원화였는 바, 징수일원화에 수반하는 조직의 재편성은 최소한으로 억제되었다. 즉, 징수일원화에 앞서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법률·행정제도의 개혁 및 정비를 위하여 사회보험청에서 수명의 법률가나 컴퓨터 전문가 등이 자리를 옮겼지만 사회보험료의 징수에 종사하던 사회보험청의 직원은 징수일원화 후에도 사회보험청에 머물렀다.[50]

위와 같이 징수일원화에 수반하여 징수원칙의 근본적인 개혁도 실행되었다. 예를 들면, 소득세, 사회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나의 신고서로 가능

49) 국세청은 징수기관으로서 자영업자 및 임금노동자의 사회보장료를 조세와 함께 일괄징수한다. 즉,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되어 국세청에 납부하며, 고용주 부담분은 전월임금 총액에 일정비율로 부과 매달 고지하고, 자영자 부담분 :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을 연말에 세금과 함께 정산한다. 국세청은 세금과 보험행정에서 동일한 개인 식별번호 사용하며, 징수에 관한 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매주 사회보험위원회로 송부하며, 두 기관은 공통의 개인ID로 납세자와 피보험자를 관리, 다만, 보험료를 납부할 고용주의 등록관리는 국세청의 고유 권한이다. 다만, 국세청이 징수업무 전반 관리, 관련정보만 사회보험위원회에 송부한다.

50) 스웨덴의 경우 연금, 자기고용자(self-employed persons)나 고용주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미국 사회보장국, https://www.ssa.gov/policy/docs/progdesc/ssptw/2018-2019/europe/sweden.html(최종검색일 2020.4.30).

하게 하는 조치 외에 이들에 적용되는 법률·행정상의 규제·규정(rule)의 거의 모두(징수절차, 가산세·연체세의 부과기준, 쟁송절차 등)에 대하여 같게 하는 철저한 관계제도의 융합·간소화대책이 강구되었다.[51]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징수일원화 지원책이 실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징수일원화에 수반하여 필요로 되는 새로운 컴퓨터의 개발에 관한 예산상의 조치가 행해지는 한편, 보험료의 징수에도 종사하는 세무서 직원에 대한 사전연수·정보제공, 국세국에 대한 운영지침·법률해석 통칙의 발표, 새로운 원천징수·납부에 관한 규칙을 사업자에게 주지하는 광고활동이나 팸플릿·신고서등의 송부가 대규모 로 행하여졌다.

4)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1965년까지 캐나다 노동부(Human Resources & Skills Development Canada)가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고용보험 및 노령보장연금(Old-age Security Insurance, 보험료 부담 없고 재원은 세금)의 급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1966년에는 부과방식에 입각한 포괄적인 연금제도인 캐나다 연금보험(Canada Pension Plan : CPP)[52]이 도입되었지만, 당해 연금의 보험료 징수도 당초는 캐나다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무관할은 1971년까지 계속되었지만 1972년 이후는 캐나다 국세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이 고용보험과 캐나다 연금보험의 대상자 결정과 조세 및 보험료의 징수사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징수일원화가 도모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노동부는 사회보험급부 업무만을

51) 松田直樹, 前揭論文, 49面.

5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캐나다 연금제도(The Canada Pension Plan, CPP)제도를 1966년 1월부터 시행, 운영하고 있다. 퀘벡의 경우 Quebec Pension Plan (QPP)를 통해 캐나다 다른 지역에서 제공되는 CPP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퀘벡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캐나다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캐나다인들은 CPP 제도에 참여하여 매월 기여금(보험료)을 내고 있다. CPP는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 및 수령을 할 수 있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연간 수입이 최저 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황종남, "캐나다 사회보장제도의 이해,「캐나다학 연구」제25권 제1호, 한국캐나다학회, 2019.8., 48면).

담당하게 되었다.[53]

캐나다의 경우 징수일원화가 필요하게 된 배경으로서는 ① 보험료를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분담하여 지불하였기 때문에 고용자 및 피고용자가 일관하여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점, ② 고용자는 급여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캐나다 국세청의 소득세 담당부서와 캐나다 노동부의 고용보험담당부서를 상대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어 번잡성이 지적되어 징수일원화도 고용자·피고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시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54]

징수일원화를 행할 때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사무를 캐나다 노동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데이타의 인계와 조사·징수담당자의 국세청으로의 이관이 행하여졌다. 이관된 자료는 이관을 받기 전에 이미 캐나다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활용방법이 새로운 과제로 되는 일은 없었다. 한편, 노동부 직원의 이적에 대해서는 직원의 능력이나 흡수합병되었다고 하는 의식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조직전체로서의 시각이 고객지향으로 향해졌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

나. 사회보험급부업무 담당관청이 관할하고 있는 국가

1) 프랑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독일형인 사회보험과 영국형인 사회부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본인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 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프랑스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이 된다.[55]

사회보장은 수평적으로 업종 직종 직업에 따라 일반레짐(regime : 건강보험,

53)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연금, 사회보험료, 실업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미국 사회보장국, https://www.ssa.gov/policy/docs/progdesc/ssptw/2016-2017/americas/canada.html(최종검색일 2020.4.30).

54) 松田直樹, 前揭論文, 52面.

55) 주프랑스대사관, 전게보고서, 1-22면 참조.

노령연금, 가족수당, 근로산재, 일반사회보장부담금, 사회부채상환부담금), 특별레짐, 농업레짐, 자영업자레짐[56]으로 구성된 공공제도와 실업보상레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이들 제도 안에 기초, 보충, 추가제도 등이 부가되는 모자이크식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레짐은 별도의 관리기구인 조합의 형태로 존재하며, 고용주 근로자 자금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사회부조는 사회보험의 보상수준이 미흡하거나 보험가입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회부조는 사회적 최소보장인 사회적 최저수준의 생활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부조가 있으며, 이의 활동에는 활동연대수당, 특별연대수당, 연금대체수당, 임시대기수당, 성인장애수당, 장애보충수당, 주거지원제도, 보편의료보장제도 등이 포함된다. 다른 형태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 및 지출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와 사회보장세로 충당된다. 원칙적으로 사회보험료은 소득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레짐별 위원회에서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2) 독일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며,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체계, 사회보장 급여수준은 임금과 연계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근로자간 연대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종주국이다.

독일은 사회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사회법전 4권(사회보험 총칙규정)에서 규정하는데,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임금 고용(geringfügige Beschäftigung)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임금 수준에 따라 초저임금 고용과 저임금고용으로 구분하고 사회보험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즉 미니잡(초저임금 집단), 미디잡

56) 이 레짐에는 농업을 제외한 비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로서 상공업 분야의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등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직종 위한 것이다.

(미니잡과 정규 고용사이), 복수의 임금소득에 관한 규정(복수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임금을 합산하여 사회보험 가입 및 징수 규정을 적용), 자영업자로 구분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2009년에 건강보험 의무가입, 연금보험은 일부 직종(출판인 등)은 의무가입이나 대부분은 임의가입이고, 실업보험은 2006년부터 임의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이지만, 추가적으로 월세(집세), 자산소득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57]

4. 정책적 시사점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는 각국마다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크게 사회보험급부업무 담당관청이 관할하고 있는 국가, 재무부·국세청이 국세의 징수와 일원화하고 있는 국가, 국세업무와 일원화를 부분적으로 행하고 있는 국가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담당부처나 사회보험청이 사회보험료의 징수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회보험제도는 수많은 사회보험조합들에 의해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 연금보험은 27개 조합, 산재보험은 58개의 조합 그리고 질병보험은 202개의 조합이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연금보험, 의료보험, 수발보험 및 실업보험의 적용·징수업무는 질병금고가 담당하고 있다.[58] 그런데 이 유형에 속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모두 소득 파악과 징수가 어려운 자영업자(지역가입자)는 연금공단에서 운영·징수 업무를 전담한다. 우리나라처럼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를 통합해 운영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 말할 수 있다.

영국, 스웨덴 및 캐나다 등은 국세와 징수의 일원화를 이루고 있다. 즉 공적연금재원이 사회보장세 혹은 사회보험료로서 조세와 함께 일원적으로 징수되

57) 한국노동연구원, 전게서, 121면.

58) 남찬섭·백인립, 전게논문, 9면.

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9년 징수공단이 세입청 내로 이전됨으로써 사회보험료 적용 및 징수업무 모두가 세입청으로 이관되어 기업과 개인들이 한 기관을 통하여 조세와 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우선적인 목표였으며 조세관련규정과 사회보험료 관련 규정을 더욱 통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된다.[59] 요컨대, 사회보험제도를 고용자에게 보다 간소하고 순응비용을 낮게 하여 사회보험료와 세금의 새로운 통합촉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60]

사회보험료의 적용 및 징수업무의 국세청의 이관은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와 형평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소득파악의 주무부처인 국세청이 적용·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별도의 기관에서 국세청과는 별개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의 실질적인 확대나 소득파악 증진 그리고 사각지대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징수일원화에 수반하여 소득세, 사회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나의 신고서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 외에 이들에 적용되는 법률·행정상의 규제·규정(rule)의 거의 모두(징수절차, 가산세·연체세의 부과기준, 쟁송절차 등)에 대하여 같게 하는 철저한 관계제도의 융합·간소화대책이 강구되는 등 징수원칙의 근본적인 개혁도 실행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59) 상게논문, 7면.

60) 미국의 경우 고용세의 순응수준에 대하여 국세청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세금과 사회보장세의 일원화를 통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용세에 대한 국민의 순응수준이나 징수율은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이나 징수태세의 의지에 좌우될 것이다.

Ⅴ. 사회보험료 징수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일반

가. 현행제도 및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일원화하여 위탁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중복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은 물론 징수통합 후 절감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보험료 징수통합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 이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보험가입자들은 징수업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3개 보험공단을 각각 상대해야 하고, 또한 보험별로 부과기준과 적용범위 등이 달라 보험사무가 복잡해 행정비용 증가 및 업무의 중복으로 사업자에게 많은 시간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둘째, 징수업무만 통합되어 있고 각종 상담은 해당 공단으로 하고 있어 보험가입자들은 오히려 불편이 늘어났으며, 더군다나 각 공단간 업무협조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자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셋째, 실질적인 업무는 각 공단에서 하고 있으나 신고까지 건강보험공단에 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공단의 해당 공단에 대한 자료배부가 누락처리되는 등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각 공단별로 관련서류를 다시 신고하게 되어 업무의 이중부담으로 사업자 및 세무사 등 관련 대리인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넷째, 보험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자료 중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별도로 요구하여 이중적 부담을 주고 있다.

다섯째, 자료 제출 등의 업무는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지만 대부분의 영세 사업자 등은 각 공단의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제대로 된 4대 보험관련 지식조차 없으며,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자는 4대보험 관련 업무를 기장대리를 통해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4대 보험관련 각종 신고업무까지 세무대리인이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대리인과 사업자간의 분쟁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단은 인원 부족, 업무 편의 등을 들어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나. 개선방안

1) 현행제도에 대한 평가실시

금번 4대 사회보험료의 징수일원화에 대한 평가는 효율적인 징수라는 측면에서의 강력한 집행의지 및 징수기관의 업무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아울러 사회보험료의 효율적인 징수의 성공요인으로는 ① 간소하고 신속한 보험료의 징수실적과 보험급부액을 연결하는 체제의 정비 ② 보험료 납부실적의 역년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③ 과소납부나 미납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통지·조사하는 체제의 정비 ④ 이들 제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을 담보하는 기술력 ⑤ 이들 제도, 시스템 및 기술력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육성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우리의 제도를 위와 같은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단기방안 :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가칭)사회보험종합민원센터 마련

징수업무가 통합되어 민원인이 자격(적용)·부과·급여업무의 소관공단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각각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즉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one-stop service) 차원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복합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 공단의 지원을 받는 (가칭)사회보험종합민원센터를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3) 중장기 방안 : 국세청에 의한 국세와 사회보험료 징수 일원화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한 「사회보험료부과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치하여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며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61]

첫째, 국세청의 소득자료와의 전산연계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다. 4대 보험가입자인 납세자가 수정신고, 세무조사, 경정청구 등에 의해 소득이 변동될 경우 즉시 변동된 소득자료를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통보하여 보험료 징수체계와 세무행정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의 소득관련 자료가 징수공단으로 이관되어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차를 줄임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국세청 자료를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보험료 산정 및 부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대상자 중 직업과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인구들을 더욱 많이 사회보험망으로 끌어 들일 가능성이 현재보다 매우 높다. 즉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상당부분 축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셋째,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중 상당부분이 사회보험 대상자임을 고려할 경우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국가재정은 물론 국민의 세금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넷째, 4대 보험별로 각기 다른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시킬 수 있는 중장기 제도적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보험제도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보험료

61)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로의 관리를 염두에 둘 경우 각 공단마다의 증원을 피하면서, 각 부처 또는 공단의 주도적 경쟁을 피하고, 각 사회보험공단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공무원 증원 역시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사회보험료의 부과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2007.2.27, 11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다섯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체계화하고[62]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체납처분을 원활히 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기준인 과세소득의 파악체계

가. 현행제도 및 문제점

첫째, 사회보험료의 부과산정기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그 동안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63]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하고, 종전에는 고액 재산가가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현상도 나타난 바 있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높아 지역간 이동시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최근 근로자의 사회비용 부담률이 자영업자의 2.5배에 달하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2010년 54.7%에서 2016년에는 86.1%로 높아졌다고 하나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

62) 국세의 경우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납세증명서제도,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자료의 제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으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국세징수법 제7조의5).

63) 현재는 건강보험피부양자 요건으로는 종합소득이 3,400만원 이하, 재산이 5억 4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 사업주의 신고 소득에만 근거해 건강보험료를 물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점[64]을 보면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국세청 및 지방행정기관과 사회보험기관간에 과세관련 정보의 공유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행제도를 보면 보험공단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장은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 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지만,[65]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자료는 보험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적기에 활용할 수가 없게 된다.

나. 개선방안

정부는 그 동안 소득파악을 위하여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차원에서 많은 개선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한 단계 발전하였으며, 2008년도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하여 그 간 근로소득 파악의 사각지대로 간주되었던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크게 향상되었다.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득파악도 제고될 것이다.

또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66]는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의료업·변호사업·세무사업·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

64)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856781l(최종검색일 2020. 4.30).

65)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

6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 제4항.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의 축소를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67] 앞으로도 사회보험료 및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소득파악을 위해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보험기관이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조사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과세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동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와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재산·근로자 변동 등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파악된 소득과 비례하지 않은 소비지출, 자산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득파악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월급 외의 다른 소득을 빠뜨리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에서 버는 근로소득 외에 임대·사업·금융·배당·연금 소득 등 종합소득[68]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체계 및 피부양자의 자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한 바와 같이 소득월액 산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불평등한 사회보험 부과구조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열악한 건강보험재정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6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 제7항.

68)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3. 4대 보험별 징수제도의 불일치

가. 현행제도 및 문제점

1) 연체금 가산방법의 상이 등

4대보험 모두 종전에는 최초가산율은 3%로 동일하였다. 납부 기한까지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고용· 산재보험료는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69)70)]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고용·산재보험료는 1천분의30)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4대보험료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2019.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경우 중가산금(2018.12.31 이전 매월 1.2%, 2019년 0.75%)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까지 가능하므로 체납국세의 75% 또는 48%(체납국세의 3%인 가산금 포함)까지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71)]

69)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제97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70)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2항 제1호 :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각각 3천분의 1, 1천분의 90이다(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3항).

71)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미납기간(일수)×25/100,000)와 미납세액의 3%를 합한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표 2> 4대 보험별 연체금 가산방법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비고(국세)
최초가산율	(종전 : 3%)	(종전 : 3%)	(종전 : 3%)	3%
가산율(매1일)	1/1,500	1/1,500	1/1,000	매월 0.75%
최대가산율	최대 2%	최대 2%	최대 3%	최대 48%(60개월)

2) 보험간 소멸시효기간의 차이

국민연금의 소멸시효의 경우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및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5년이다.

<표 3> 4대 보험별 소멸시효

구 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국세
소멸시효	3년	3년(* 과오납금 반환: 5년)	3년	5년
근거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국민연금법 제115조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54조

나. 개선방안

지연이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4대 보험 연체금의 최대가산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차별적 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또한 보험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법의 단순화를 위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도 동일한 이유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4.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 문제

가. 현행제도 및 문제점

1) 공단의 보험사무의 세무사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

세무사의 직무범위에는 4대 보험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을 하고 2년 이상 직무를 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개인세무사는 세무법인과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도록 하여 고용·산재보험업무에 한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아 대행을 하고 있다.[7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무사무소에서 실질적인 고용·산재보험업무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역할뿐만 아니라 연금 및 건강보험업무를 포함한 4대 보험업무 전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관련 보험공단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중소사업자가 보험사무대행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사는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73]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부 대행하고 있으며, 세무사사무소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사업자를 위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공단은 세무사사무소를 단순 업무위탁기관으로 보고 전문 자격사로서의 대우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단에 사업자들이 상담을 해도 공공연하게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확인하라는 안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사업자는 당연한 권리인 듯 세무사사무소에 업무대행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7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

73) 2018년 3월말 현재 산재(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수는 2,419,792(2,126,908)개소로 전년 2,390,849(2,111,996)개소 대비 28,943(14,912개소)(1.21%(0.71%))가 증가하였다(2018년 1/4분기 산재·고용적용 사업실적(통계)자료).

2) 업무부담의 과다 및 비현실적인 보험사무대행지원금

가) 업무부담의 가중

세무사회에서도 개인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소규모 사업장 대다수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개인세무사(업무경력 2년 이상)를 2014년도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세무사가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인가 받아 4대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란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무처리 능력보완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험가입자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위임업무는 ① 보수총액 등의 신고 ②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④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⑤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있다.[74] 이와 같이 보험사무대행 인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경우 4대 보험업무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고용·산재보험업무에 한정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업무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사업자는 고용·산재보험업무를 포함한 4대 보험업무를 전체를 의뢰한 것으로 생각하여 실제업무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업무는 팩스로 신고하고 전자신고시에는 사업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위임받아 신고하므로 업무부담이 가중된다. 그리고 보험사무대행인가기관은 공단으로부터 매년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도 지니고 있다. 지도점검 중 지적사항이 발생하거나 전자신고율이 높지 않은 보험사무대행기관등은 주의조치를 받거나,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되므로 세무사사무소로서는 이에 대한 부담 또한 크다.

7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6조.

나) 비현실적인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세무사의 위탁기장사업자의 수가 평균 100개라고 가정하고, 이 중 피보험자 신고를 하는 사업장이 50개라면 평균 보수는 반기에 위임사업주 1명당 16,000원을 지급하므로 연간 160만원(월 13.3만원)정도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75] 특히,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피보험자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경우 수임업체당 인원수(업무량)와 관계없이 분기에 위임사업주 1명당 12,000원(피보험자신고등을 4건 이상 한 때에는 16,000원)의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76] 이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익구조이므로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인가를 받아 동 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무실 경영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

보험사무대행인가를 받을 경우 책임이 뒤따라 보험관계의 신고,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를 부담한다. 또한 근로자 퇴사신고시 그 사유를 거짓 신고하였을 때 건별로 5-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과실이 누적되었을 때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77] 만약 피보험자 신고 누락된 근로자가 산재사고시 근로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50%(미납보험료의 5배 한도)를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직원이 실수할 경우 세무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업과 벌목업의 경우 복잡한 신고절차 등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 공단의 조사 등으로 상당한 보험료 추징 및 과태료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세무사 등의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인가를 받아 4대 보험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7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시행 2018.2.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4호, 2018.2.21., 일부개정]) Ⅰ. 1. 가. 1).

7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시행 2018.2.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4호, 2018.2.21., 일부개정]) Ⅰ. 1. 나. 1).

7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나. 개선방안

보험대행사무지원금의 현실화가 급선무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책임에 비해 지원금의 수준이 작아 실질적으로 사무대행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보험자 관리대행지원금은 현재의 지원방식이 업무량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78] 그리고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행정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방법의 문제

가. 현행제도 및 문제점

1) 부과방식 변경상의 문제

2010년도까지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자가 매년 2월말까지 신고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지하면 이를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나(자진신고방식), 2011년부터는 이를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까지는 사업장 단위로 전년도에 지급한 확정 임금총액과 다음 연도 개산 임금총액을 확정신고 하였으나(개산보험료가 30%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전년도 임금총액으로 신고), 2011년도에는 사업장단위 임금총액이 아닌 근로자 개인별로 보수총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15일까지 전월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인별로 기재하여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달에 고용·산재보험료를 반영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부과고지한다.

아울러 근로자월별급여 변경에 따른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수시로 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장단위의 임금총액에 부과하는 준조세임에

78) 김주일외 5인, 「보험사무대행제도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대학교, 2005.11.30. 154면.

도 사업자에게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보수총액과 일용근로자의 매월 지급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수의 중소사업자에게는 업무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 근로자 연말정산과의 시기 불일치

모든 사업장은 1년간 보수총액에 대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연말정산하여 국세청에 보고함과 동시에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79]

전에는 연말정산시기보다 앞서 2월말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하였던 것을 연말정산 이후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도록 변경한 것은 현실을 감안한 제도 변경이라 하겠으나, 정산절차인 보수총액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기한을 각각 다르게 정하므로써 사업주의 혼란과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3) 이중신고에 의한 업무부담 가중

사업자는 연말정산 신고, 일용직 지급명세서제출 등으로 급여 관련 신고를 국세청에 이미 하였음에도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별도로 신고를 하고 있다. 이는 관련 기관 간 업무연계의 비효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전자신고는 한 곳에서 하여야 하지만 문서에 의해 수동 작성하는 곳은 이중신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4) 전자신고의 문제

직무경력 2년 이상으로 교육을 이수한 개인세무사들은 공단에 보험사무대

79)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

행기관으로 신청하여 인가를 받게 되면 보험사무 신고를 팩스가 아닌 전자신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업무와 관련된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5조[80]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납부책임 및 과태료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수의 세무사 등은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보험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근로자개인별 보수총액은 기존 보험료신고와는 달리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를 전년도 말 현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하고, 10인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반드시 정보통신망(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해 신고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거의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주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부기장을 대행하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신고하는 경우 수임업체의 EDI(전자문서교환)에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 세무사사무소에서 보험관련업무 수행시 팩스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신고 후 전화로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했음에도 무신고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 개선방안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장단위로 부과하면서 사업자에게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임금총액신고서로 변경하고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수총액 전자신고시 대리인이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과 달리 사업장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

80) 공단이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및 제26조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금액을 내야 한다.

하여 별도의 소득총액 신고 없이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다.[81]

6.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제도의 문제

가. 현행제도 및 문제점

(1)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부터 사업장에 대하여 매월 사용한 일용근로자 개인별로 인적사항, 근무일자, 일일근무 시간 및 일일 지급한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시로 변동되고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를 담당할 사원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매월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그리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그 동안 고용노동부에 매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 매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업무부담이 있었으나, 사업자가 근로내역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매분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해당 사업자는 매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82]를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국세청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내용을 표기하여 같이 제출할 수 있으나, 현실은 제출누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각각 제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자는 이중으로 시간과 비용 등 업무부담을 지고 있다.

(3) 일부의 일용근로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보험과 연금보험 신고대상이 아님), 주민등록말소자, 신용불량자 등으로 일용근로자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81) 신현범, 「4대보험실무」, 한국세무사회, 2018, 299면.

8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별지 제22호의7서식].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과중과 복잡함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비자코드(F-4 또는 H-2 등)를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업무과중에 해당한다.

나. 개선방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부당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용근로자 매일 근무시간과 보수내역에 대한 신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나, 사업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83]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7. 보험료의 추징문제

가. 현행제도 및 문제점

(1) 사업자가 사회보험료를 과소신고한 경우 보험공단은 국세청 자료와 대사하여 부족 보험료에 대하여 추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동일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고 영세사업자의 경우에 작성이 용이하지 않는 자료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다.

(2) 보험공단의 경우 사업장 지도, 점검시 사업자에게 전사원의 임금대장(일용직 노무비 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등 지난 3년간의 자료와 해당연도 자료 즉, 4개년에 걸친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료 부

83)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족액을 추징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결국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이중으로 추가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어 사업자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나. 개선방안

사회보험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순응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순응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중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만 보험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 보험가입 등 각종신고방법 등의 문제

가. 현행제도 및 문제점

(1)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자가 관련서식 신고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해당 공단의 EDI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사업자의 공인인증서 가입, 전산미숙 및 보험업무를 잘 알지 못해 EDI로 신고하는 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 이러한 사유로 중소사업자를 대신하여 세무사사무소가 4대 보험공단에 관련서류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다. 하지만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각각의 위임장을 받아 업무처리를 해야 하므로 이중 부담이 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지원금 정책도 없기 때문에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도 큰 잇점을 느끼지 못하고, 고용산재EDI만 전자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보험사무대행기관 EDI싸이트는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만 로그인이 가능하다. 즉, 구글의 크롬이나 MS의 엣지브라우저, 네이버의 웨

일브라우저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새로운 브라우저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에 소홀하다고 볼 수도 있다.

(4) 세무사사무소의 경우 급여대장 작성시 매월 고지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반영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다. 그런데 인별 고지된 보험료의 경우 사회보험 징수포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 이 싸이트는 보험사무대행기관도 로그인이 불가능하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장을 받아서 로그인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결국 각 회사에서 회사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엑셀자료로 다운받아 세무사사무소에 보내주면 그 자료를 참고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

(5) 세무사사무소가 각종신고를 대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순신고오류에 대해서도 보험공단에서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당초취득일, 상실일을 사업주와 전화로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오류가 발생하며, 상실사유도 일반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이를 사유변경으로 수정하는 경우 당초신고를 변경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나. 개선방안

현재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 고용·산재EDI로 3분화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자신고로 업무처리하려는 세무사사무소에서는 고용·산재EDI를 가입하여야 하고, 이때 필수적으로 고용·산재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위한 위임장을 받게 되는데, 이 위임장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위임장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각각의 보험공단이 간단하고 편리한 업무처리환경 조성을 위해 협의한다면 언제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단측에서 사용자들의 브라우저 사용비율을 분석한 후,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순한 오류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나 과태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2011년 1월부터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중복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은 물론 징수통합 후 절감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단의 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업무인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민원업무도 동 공단 지사로 창구가 일원화 된다.

보험료 징수통합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 이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보험가입자들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3개 보험공단을 각각 상대해야 하고, 보험별로 부과기준과 적용범위 등이 달라 보험사무가 복잡해 행정비용 증가 및 업무의 중복으로 사업자에게 많은 시간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둘째, 징수만 통합되어 있고 각종 상담은 해당 공단으로 하고 있으며, 각 공단간 업무협조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자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즉 실질적인 업무는 각 공단에서 하고 있으나 신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해당 공단에 대한 자료배부가 누락처리되는 등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무상으로는 각 공단별로 관련서류를 다시 신고하게 되어 업무의 이중부담으로 사업자 및 세무사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보험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하여 사업자에게 이중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보험료 산정기준인 과세소득의 파악체계, 4대 보험별 징수제도의 불일치,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 문제,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방법의 문제,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제도의 문제, 보험료의 추징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1) 금번 사회보험료의 징수일원화에 대한 평가는 효율적인 징수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집행의지 및 징수기관의 업무에 대한 보험자·피보험자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현행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징수업무가 통합되어 민원인이 자격(적용)·부과·급여업무의 소관공단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각각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상되는 복합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 공단의 지원을 받는 (가칭)사회보험종합민원센터를 마련하는 등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의 소득관련 자료의 활용,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국세청을 통한 국세와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사회보험료 및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평등한 사회보험 부과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보험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연이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보험별로 연체금의 최대가산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차별적 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도 동일한 이유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5) 보험대행사무지원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행정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대다수의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인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장단위로 부과하면서 사업자에게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임금총액신고서로 변경하고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수총액 전자신고시 대리인이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부당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용근로자 매일 근무시간과 보수내역에 대한 신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나, 사업자가 부담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8) 사회보험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순응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료 추징과 관련되는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9) 보험가입 등 각종신고방법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각 공단의 위임장을 하나의 공통된 위임장으로 통일하고, 보험사무대행 EDI싸이트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오류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나 과태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강희갑외 5인(전대성·이상주·오현숙·정왕용·이진우),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사회보험료의 부과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2007.2.27.

근로복지공단, "2011년 달라지는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2011.

_____, 「2011년도 산재·고용보험 징수체계 개편 : 가입 및 부과업무 매뉴얼」, 2011.

_____, 「보험사무 대행업무 실무편람」, 2011.

_____, 「2011년 달라지는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납부제도」, 2010.12.

김기원, 「(제3판)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7.

김근주, "고용안전망 체계 개편의 방향과 정책적 검토 사항",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20.3.

김동헌·허재준,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30권 제1호, 한국정부학회, 2018.

김성수, 「세법」, 법문사, 2003.

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9.

김주일외 5인, 「보험사무대행제도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대학교, 2005.11.30.

김진수 외 3인, 「건강보장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소득파악체계 비교연구」, 2009.

남찬섭·백인립,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의 함의와 전망", 「복지동향」,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0.6.

류만희, "사회보험료 징수통합과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소득파악은 별개문제?", 「복지동향」, 2009.3.

사회보험 징수통합 실무추진단, 「사회보험 징수통합 징수업무편람」, 2010.12.

신현범, 「4대보험실무」, 한국세무사회, 2018.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1.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1.

이용갑 외 3인,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기능의 통합과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 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08.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제8판)」, 법문사, 2010.
조원탁·김형수·이형하·조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1.
주프랑스대사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개혁동향”, 2017.4.5.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
최 원, “사회보장세법상 세율의 적정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조세법연구(ⅩⅣ-3)」, 한국세법학회, 2008.12.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한국노동연구원, 「사회보험료의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17.9.
홍완식, 「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황종남, “캐나다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캐나다학 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캐나다학회, 2019.8.
松田直樹, “國稅と社會保險料の徵收一元化の理想と現實”, 「稅大論叢」 第47号, 2005.

<Abstract>

The Study on the Current Unified Collection of Social Insurance Premium and Improvement Plan

Kim, Byung-Il* · Baek, Seung-Sam**

In order to solve inconvenience of payer about duplication of collection for social insurance and improve inefficiencies of task for social insurance, korea government unified collection of social insuranc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urpose of this change is to strengthen and extend social insurance service for payer. However, in spite of expectation effectiveness of collection unification of premium, its unification work didn't substantially alter. In this situation, korea government addressed that to recover economic impact and resolve blind spot of employment insurance, government declared to carry forward employment insurance mandatory subscription of the whole korean people. Also, standard of assessment for employment insurance will be income. In this view, argument of review at standard of assessment for other social insurance as well as employment insurance and simultaneously unification of collection for social insurance premium will be raised. Thus, improvement plan for the problem of existing social insurance premium is set out as follows.

First, To reduce incontinence of payer causing separated task of managing public corporation and collec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providing one-stop service need to devise.

Second, To enhance equity of burden for premium such as solution of blind spot by using National Tax Service' income data, as establishing collecting public corporation under National Tax Service(NTS), it needs to

Received: June 04, 2020 Revised: June 26, 2020 Accepted: June 29, 2020

* Kangnam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y and Tax Science, First Author ; bikim22@daum.net

** Graduate School of Kangnam University, Doctoral Programs,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 Corresponding Author ; taxbss@daum.net

consider that NTS unifies collection both nation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

Third, To strengthen equity of social insurance premium and taxation,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should be constantly going to be modified and be simultaneously discussed study in depth for system of assessment of premium

Fourth, To institutionally settle social insurance, it is important to set up a cooperative system of entrepreneur. That is, For request for materials related to collecting in addition of premium, first entrepreneur needs to actively use data submitted to NTS, and It is desirable that additional request for materials of entrepreneur is implemented in range of the minimum to induce a sincere report of premium.

Key words: blind spot of employment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mandatory subscription, unified collecting, standard of assessment of social insurance premium